



보도 일시	2022. 2. 3.(금) 11:30	배포 일시	2022. 2. 3.(금) 10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	책임자	과 장 정동영 (044-215-5170)
		담당자	사무관 이민정 (minjung2@korea.kr)
담당 부서	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결산검사과	책임자	과 장 김건유 (02-2011-2156)
		담당자	부감사관 정신영 (shinyung07@korea.kr)

공공기관 투명성 확보 및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한 결산심사 개편방안 추진

- ◇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 회계감독을 강화한 결산심사 개편방안을 마련
 - 공공기관 결산서 기재부 및 주무부처 제출을 3월 15일로 연장(현 2월말)하고 회계감사인을 조기 선임하여 회계감사인의 충분한 감사기간 확보 추진
 -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시를 총 21일(8월 20일 → 7월 30일) 앞당겨 국회의 공공기관 결산 심사기간을 확대하여 국회 심사 내실화 추진
 - 감사원의 결산검사 대상기관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(22년 결산 기준, 25개 → 41개 예상)하여 감사원의 회계감리 역할 강화 추진

□ 정부는 2.3(금) 개최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「공공기관 결산심사 개편방안」을 추진하기로 하였음

○ 이는 국회의 공공기관 결산기간 단축방안 마련 요구 반영 및 '21년 발표한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한 것임

□ 기관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「공공기관 결산심사 개편방안」은 아래와 같음

【 공공기관 회계감사인 감사 내실화 】

- ① 회계감사인 감사기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결산서 제출일을 2월말에서 3월 15일로 연장하는 방안*을 추진

*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 예정

- ② 회계감사인이 당해 기업의 거래내역·실태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선임에서 3개월 이내 선임으로 회계감사인 조기 선임* 추진

* 「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」 개정 추진 예정

【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 일정 단축 】

- 국회 결산 심사기간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일을 8월 20일에서 7월 30일로 앞당겨* 국회 심사기간 총 21일 확대 추진

*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 추진 예정

【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 확대 】

- 감사원 회계감리 역할 강화를 위해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기관을 감사원 지정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까지 확대* 추진

* 현재(25개, 감사원법 22개 + 감사원 지정 3개)

→ 변경(41개 예상**, 감사원법 22개 + 감사원 지정 19개)

** 2022년 결산대상기관 기준이며 '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('23.1.30. 발표)' 및 '23~'27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(8월말 예정)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

참고**감사원 결산검사 대상기관 확대(2022회계연도 기준)**

구분	기관명
현재 (25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감사원법* : 22개) 광해광업, 석탄, 석유, 주택보증, 인천공항, 철도, 한국공항, 도로, 수자원, NH, 부산항만, 인천항만, 농어촌, 코트라, 캠코, 주금공, 조폐, 여수광양항만, 울산항만, 코바코, 농수산식품유통, 관광, (감사원 지정** : 3개) 한전, 지역난방, 가스
변경 (41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감사원법 : 22개) 동일 (감사원 지정 : 19개) 한전, 지역난방, 가스, 강원랜드, 한수원, 발전5사, 공무원연금, 예보, 중진공, 국민체육, 건보, 장학, 국가철도, 서민금융, 산단공

* 감사원은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를 검사(감사원법§22①)

** 감사원은 자산규모 등 감안 결산감사기관 지정·해제 가능(공공기관 결산감사 규칙§20②)